#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

#### [시행 2012. 12. 18] [보도환경개선과 제4217호, 2012. 12.18]

- 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진·출입하기 위한 시설(이하 "출입시설" 이라 한다)의 허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도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와 원활한 도로교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적용범위) 이 지침은 「도로법」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서울특별시장이설치 및 유지·관리하는 모든 도로에 적용하되, 도로의 관리청이 자치구청장인 도로에도 일관된도로시설물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출입시설"이라 함은 차량이 도로외의 특정장소로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의 일부를 횡단 하여 개조한 것으로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고, 표준출입시설이라 함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된 것을 말한다.
- 2. "보도"라 함은 연석선(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(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「도로의 구조·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6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- 3. "차도"라 함은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- 4. "업소"라 함은 출입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
  - 가. 「주차장법」 제2조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
  - 나. 여러 필지상에 있는 하나의 사업장

제4조 (표준출입시설의 설치기준) 출입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- 1. 보행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
- 2. 보행자와 운전자가 출입시설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곡선구간 및 전주, 가로수 등으로 시야와 통행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
- 3. 차량이 차도로부터 업소까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시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단거리일 것
- 4. 설치개수는 업소별로 2개 이내로 할 것
- 5. 업소 내에 출입시설을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, 주유소나 주차장 등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업소에서 출입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출입시설 사이에 5m 이상의 간격을 둘 것

- 6. 서로 다른 업소의 출입시설은 인접하여 연속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, 각 업소의 출입시설에는 각 업소가 서로 접한 대지 경계의 보도방향 연장선으로부터 2.5m이상의 간격을 둘 것
- 7. 업소에 닿아 있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출입시설을 설치할 것
- 8. 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시설은 그 하위 법령·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

**제5조 (표준출입시설의 설치금지)** 출입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.

- 1.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주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25호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.
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5호(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)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3. 횡단보도(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)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유아원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5. 「건축법」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나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간 등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·정차하기 위한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6조 (표준출입시설의 규격 등) ① 출입시설은 별표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② 1개의 출입시설의 너비는 6m 이내로 하되, 제4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히 인접한 업소의 출입시설과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전체 너비를 9m 이내로 한다.
- ③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하는 도로모퉁이의 각도(이하 "가각"街角이라고 한다)는 45°~ 90°이내로 하고, 각(角) 부분의 정리는 1m × 1m 이내로 한다.
- ④ 보행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보도의 경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1. 출입시설 종단 방향(보도 기준 횡방향)
    - 가.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1m 이내는 10 ~ 20% 유지
    - 나.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1m 이후는 2% 유지
  - 2. 출입시설 횡단 방향(보도 기준 종방향) 5% 이내(권장)
- ⑤ 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도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출입시설의 포장구조는 기초콘크리트를 시공·보강한다.
- ⑥ 포장 재료는 인접한 기존 보도의 포장재와 가급적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이음부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.

- ⑦ 보차도 경계석 낮춤으로 인한 보도경사 조정길이는 1m로 하되, 10 ~ 20% 경사가 되도록 일률적으로 정비한다.
- ⑧ 제2항 및 제4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 관련 별표1의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 대상시설에는 출입시설의 수와 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고, 도로에 2개면 이상에 닿는 업소로 차량의 진·출입이 주된 용도인 주유소, 노외주차장, 여객자동차정류장, 화물자동차정류장 등에는 출입시설의 수를 업소에 닿아 있는 도로면수의 1.5배수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.
- ⑨ 시장(보도환경개선과장)은 안전하고 견고한 출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물 구조와 포장 재질, 표준도면 등 규격과 시공방법을 개선한 경우, 즉시 변경된 규격(점용면적 포함)을 모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7조 (표준도면의 비치) 구청장은 출입시설의 표준원도(청사진)를 제작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, 또한 신청시 첨부 제출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**제8조 (허가신청의 접수)** ① 출입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은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으로 접수하고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.
  - 1. 일반평면 지적도(위치도) 1부
  - 2. 설계도 2부
- 제9조 (처리절차)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한다.
  - 1. 신청서류 구비사항 및 현장 조사
    - 가. 장소, 너비, 개수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
    - 나. 전문가나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기타 주변여건이 가능한지 여부
  - 2.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사전 협의
    - 가. 설치 대상 도로부지에 대한 지하시설물 매설 여부 및 각종 공법상 제약 등 규제사항 관련 사전 확인
    - 나. 필요시 도로점용시설물설치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(건설 관리과에서 사전에 제1호 및 가호 사항의 조사 후 상정)
    - 다. 위원장은 건설관리과 등 허가주관과장으로 하고, 위원은 교통행정과, 토목과, 주차행정과 등 도로 · 교통 · 시설물 관련 부서의 팀장 및 관할경찰서의 교통계장으로 한다.
  - 3. 경찰 협의 및 통보
    - 가. 출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의견을 들을 때에는 허가사항을 명확히 표시한 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한다.
    - 나. 출입시설을 허가한 후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70조에 따라 즉시 허가사항을 관할 경창

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4. 허가방침 결정 통보(가허가)
  - 가. 허가방침 내부 결정
  - 나. 허가받은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점용료 · 수수료 · 면허세 납부고지서 발부
- 5. 허가증 교부 등(본허가)
  - 가. 신청자에 대한 점용료 · 수수료 · 면허세 등의 납부 여부를 영수증 사본 징수 등으로 확인하고 허가증을 교부한다.
  - 나. 허가받은 자에게 도로점용허가표시판을 제작·교부하고 허가표시판을 도로명주소 명판 하단 등 출입시설에 가까운 건물의 외벽에 부착하도록 안내한다.
- 6. 다른 법 등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의 통보

「건축법」이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타법의 인·허가 의제조항 또는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 건설관리과 이외의 부서에서 복합 민원으로 일괄처리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관리과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부서에서 준공까지 처리하여야 하고, 허가 및 준공시 점용물, 허가기간, 허가받은 자, 점용면적, 점용료 등 허가사항을 건설관리과로 통보하여야 하며, 건설관리과 등 도로점용허가 관리 부서에서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준공 이후부터 점용료의 부과 등 유지 관리하여야한다.

- 제10조 (설치공사) ① 출입시설의 시공은 허가된 표준설계도에 따라야 하고, 그 비용은 허가 받은 자가 부담한다.
  - ② 허가받은 자는 출입시설을 시공할 때, 전문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허가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입시설을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한은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.
- 제11조 (공사감리 및 준공검사) 구청장은 건설관리과의 소속직원 증 토목직을 공사감리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고 공사완료 후 준공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설관리과 등 허가부서에 토목직이 없을 경우에는 건설관리과 담당직원 1인과 도로굴착허가부서인 토목과 등의 토목직 1인을 복수로 공사 감리로 지정하여 감독, 준공검사 및 준공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**제12조 (점용면적의 산정)** ① 표준출입시설의 양측면에 경사가 있는 경우, 양측 경사의 중간 부분을 이은 선의 길이를 출입시설의 가로길이로 하고, 출입시설이 설치된 보도의 폭을 세로 길이로 하여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한다.
  - ② 표준출입시설의 진입부 양측에 가각이 있는 경우, 양측 경계석 가각의 합산 면적인  $1 \text{ m}^2$ 를 제1항의 면적에 합산하여 최종 점용면적을 산정한다.
- 제13조 (표준출입시설의 유지관리)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

-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출입시설에 대하여 안전표지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(일명 '볼라드')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출입시설 인근의 가로수, 전주 등 도로시설물이나 점용물로 인하여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수목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이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가로수 등의 이전이나 철거에 따른 비용은 출입시설의 허가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하나,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이나 점용물의 관리자가 이전이나 철거시 비용부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관할 출입시설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(보도환경개선과장)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출입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 후 무허가 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 후 허가전환 유도 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4조 (원인자 부담금 등) ① 출입시설로 인하여 보도(측구 및 경계석 포함)가 파손 또는 훼손되었거나 출입시설 점용허가의 취소 또는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자가원상회복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우선 「도로법」제43조에 따라 원상회복한 후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고 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법 제10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와 법 제94조에 따른 무허가 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출입시설로 인하여 보도의 파손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원인자를 확정한 후 원인자에게 파손 내역과 원인자 복구 보도공사 시행 또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한 후 원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- ③ 구청장(토목과장 등 도로시설물관리부서장)은 전 항의 원인자가 관리청에게 복구공사의 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부과 징수한 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④ 시장(보도환경개선과장)은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변경한 경우,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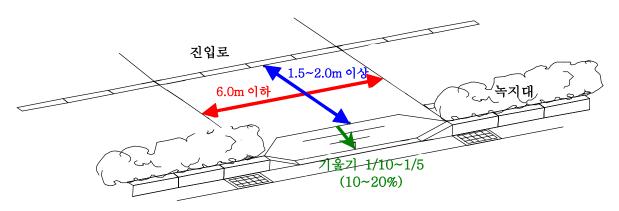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구청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의 지침에 의하여 허가된 출입시설은 이 지침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되,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허가받은 출입시설이 파손 또는 훼손으로 재시공이 필요할 때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.

[별표]

### 차량출입시설 포장 설치 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#### O 일반사항

- 보행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보도구간과 동일 재료, 동일 높이로 시공
  - ·보도 폭이 4m 이상인 경우 : 2.0m 이상의 수평면 확보
  - ·보도 폭이 4m 미만인 경우 : 1.5m 이상의 수평면 확보
- 차량진출입로 경사구간의 경사 범위
  - · 차도측 : 1/10 ~ 1/5 (10~20%)
  - ·건물측(사유지) : 지형 여건에 따라 설계·시공
- 출입시설의 너비는 6m 이내로 시공
-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 턱 높이차는 1~3cm 로 시공. 두께 150mm 이상의 낮춤 경계석 사용(기존 100mm 사용시 잦은 파손 발생)
- 운전자의 주의 환기를 위하여 경사구간은 눈에 잘 띄는 색상(붉은색 계열) 또는
   사괴석 시공
- 차량 통행으로 인한 파손(침하, 깨짐 등) 방지를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시공
- 차량진출입로에 접근하는 보도에는 점형 점자블록(경고용)을 설치하지 않음.
   단, 선형(유도)블록은 관련지침에 따라 설치여부 결정
   (차량진출입로는 차량이 보도를 빌려 쓰는 장소이므로 항상 보행인이 우선임)







[그림 1] 차량진출입로 평면도

## O 시공 주의사항

- 표층 재료 선정 및 재료별 표준단면은 [표 1]에 의해 결정
- -블록포장 시행시 블록 두께(80mm) 준수 및 포장하부 보강
- 충격하중에 취약한 블록(점토바닥벽돌, 타일블록, 도자블록 등 소성 제품) 사용 자제
- -블록포장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「서울시 보도공사 설계 및 시공 매뉴얼」에 의함
- 아스콘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「도로공사표준시방서」에 의함

[표 1] 차량진출입로 표준도

[표 l] 자턍신술입도 표준도 		
구분	차량 진출입로(평지구간)	차량 진출입로(경사구간)
블록 포장	인터로킹블록(T=80) 모래(T=30) 콘크리트(T=100), 와이어매쉬 기흥(T=150) 노반	
	▷ 모래 두께 : 다져진 후의 두께(일반보도 40mm, 차량진출입로 30mm)	
아스콘 포장	표층: 아스콘 포장 50mm 기층: 시멘트 콘크리트 150mm(와이어 매쉬 포함) ※ 기층과 표층 사이 텍 코트 시공 ※ 경사구간은 붉은색 계열로 표면 처리 ▷ 교통 조건: 주차면수 20면 이상 업소 또는 주유소	
시멘트 콘크리트 포장	표층: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50mm 기층: 골재 기층 150mm ※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(접착식) 및 분리막(비접착식) 시공 ※ 경사구간은 <b>붉은색</b> 계열로 표면 처리 ▷ 교통 조건: 주차면수 20면 이상 업소 또는 주유소	

### O 블록형상 및 포설패턴 기준

-블록형상: 하중전달률 0.5 이상 확보되도록 아래 기준 준수

-블록형태 : 블록의 맞물림(Interlocking)이 우수한 이형블록(U 블록, S 블록 등) 및 장방형  $I_2$  블록 사용

 O 블록
 I 블록, U 블록

 가로
 가로

 FM
 두께

 U 블록
 S 블록

 (사용 X)
 (사용 O)

[표 2] 사용 가능 블록

-블록 포설패턴 : 일반보도구간은 어떤 패턴을 사용해도 좋으나, 차량진출입로는 하중전달력이 좋은 지그재그 패턴 사용

[표 3] 사용 가능 블록 패턴

